

- 의료기관 개설자를 위한 -

알기쉬운 의료기관 개설·행정 길잡이

의료법·의료광고·의료폐기물·감염병·마약류·
진단방사선·건강검진·법정교육 등



강 동 구 보 건 소

- 이 자료는 2026. 5. 기준으로 관계법 중 일부를 정리한 자료이니 자세한 사항은
- 반드시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머 리 말

국민 보건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기관 개설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료기관 개설·행정 길잡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사항과 행정 절차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기획·제작되었습니다.

현행 법령과 지침을 토대로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표준 기준을 엄선하여 수록한 만큼, 행정의 정확성을 높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차 례

I	의료법	
1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2
2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3
3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17
4	비급여 진료비용	18
5	진단서 및 처방전	19
6	진료기록부	23
7	의료기관 준수사항	25
8	의료광고	32
9	의료폐기물	39
10	법정 감염병	41
11	의료관계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48
II	마약류 관리	
1	마약류 취급자 교육	51
2	마약류 취급시 유의사항	51
3	마약류 처방시 유의사항	52
4	폐업시 유의사항	53
III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54
2	특수의료장비	59
IV	건강검진 등 신고	61
V	각종 신고 서식 모음	63
VI	연간 법정 의무교육 또는 자료제출 사항	94
VII	부서 및 유관기관 안내	95

I 의료법

1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함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내에 있는 경우 명찰을 달지 아니할 수 있음)

☞ 명찰의 표시 내용

- 의료인 :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을 표시)
 학생 :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
 의료기사 :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 명찰의 규격 및 색상 :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안 됨

2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허가

- 의료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인 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 경력을 조회하여야 함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간 취업 또는 운영이 제한됨

1) 의료기관의 개설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
-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함
-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
-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야 함
- 의료기관 개설신고 구비서류

대상 의료기관	구 비 서 류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별지 14호 서식)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 의료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시설 기준, 의료인 등 정원기준)

- 의료기관 개설허가 구비서류

대상 의료기관	구 비 서 류	
종합병원 · 병원 치과병원 · 한방병원 요양병원 · 정신병원	사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청서(별지 15호의3 서식) - 사업계획서
	본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별지 16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본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 의료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시설 기준, 의료인 등 정원기준) -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 **수술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함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하여야 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함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단계의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요청 절차**

- 의료시설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전 소방본부 장이나 소방서장에 확인을 요청(소방시설법 제6조 제8항)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 취업제한 범죄경력조회 요약**

범죄명	근거법령	취업제한규정 내용요약	경력 미조회 벌칙
성범죄	청소년 성보호법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최대 10년간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아동학대	아동 복지법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최대 10년간 의료기관의 운영이나 취업 제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인학대	노인 복지법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최대 10년간 의료기관의 운영이나 취업 제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학대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및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최대 10년간 의료기관의 운영이나 취업 제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참고 및 유의사항

- **조회 대상 직종:**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도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회 시기, 주기:** 신규 채용 시 경찰서를 통해 반드시 사전에 조회해야 하며, 개설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보건소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이 이루어짐
- **본인 제출 가능:** 취업 예정자가 본인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도 기관장의 조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사항의 변경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 의료기관의 종류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 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신고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2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대진의 신고는 대리진료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함.
 - 대진의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월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 ‘1개월 미만’ 휴업할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진의를 신고하여야 함
 (공중보건 의사나 수련중인 전공의는 대진의로 고용할 수 없음)
- 병원급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시에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야 함
-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면허증 사본,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증 원본

3)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신고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신고하여야 함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

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함
 - ⇒ 의료기관이 폐업하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자격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사용하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 또는 폐기 신청을 병행하여야 함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사용한 경우 양도 또는 폐기 신청을 병행
- 구비서류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별지 제18호 서식]
 -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chmr.mohw.go.kr) 활용 가능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세탁물처리, 환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등)
 -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원본

☞ **의료기관 폐업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 '25.8. 부터 시행

- 의료기관은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신고 시**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전체 사용기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고시)

▪ **제출대상:** 병원 개설 이후 환자에게 사용(이식)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50개 품목**” 사용기록 (92쪽 목록 참조)

▪ **제출내용:**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제품정보

▪ **제출방법:**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 환자안전성정보 > 이식정보관리 기록 제출

※ **사용(이식)기록이 없는 경우:** (이메일) **이메일(mdudi@korea.kr)**로 ‘**개설일 이후 폐업일 까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현황 없음**’ **회신**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13, 5014, 5005

4) Tangjianshi Gongdongiyong Annai

○ Gongdongiyong Giben Shaxiang

- Zayurouke Jieyaxiaoye Tangjianshiwo hamge Saryonghal Su Issupnida.
- Iryosago deng Munjeoga Saenggil Gyeongyu Chaekim Sochaerel Mingsihan Jieyaxi mit Gwanlan Seoryuwo Bogwan
- Byengjingsaxiangi Saenggimyeon Gwanhal Bogjionsoee Jeoksi Singohaeya Hamnida.

○ Bogjionso Cheshul Seoryu

1. Iryogigwan Gaejeol Singosaxiang Byengjingsingosaxi
2. Tangjianshi Gongdongiyong Jieyaxi
3. Tangjianshi Gongdongiyong Naeyaxi 93jok Seosik Chamjo
4. Wonwiotangjeon Iryogigwan Gaejeolsingojungmyeongse
5. Wonwiotangjeon Seolchinaeyak Hwakinsaxi
6. Geuwo Tangjianshi Seoryu
 - Saryeopjadedongrokjung, Sangju Han'yaksaxi Myeongheojung Saxon, Gujo Seolmyeongse, Pyeongmyeondo

4) Iryogigwanui Siseolgijun · Siseolgyugyeok · Iryoginui Jeongwon deng

□ Iryogigwanui Jongryubyeol Siseolgijun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의원과 같음	의원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1의2. 임종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과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응급실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5. 임상 검사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 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 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 다)				
6. 방사선 장치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 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 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 우에만 갖춘다)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 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 다)	1 (수술실이 설 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 다)	1 (수술실이 설 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 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 는 경우에만 갖춘다)		
8. 물리 치료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9. 한방 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 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0. 병리 해부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1.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 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 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 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 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 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 는 경우에만 갖춘다)
11의2.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 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 고 탕전을 하 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 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 는 경우에만 갖춘다)	
12. 의무 기록실	1	1	1				
13. 소독시설	1	1	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 니하는 의원 은 제외한다)	1	1	1
14.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 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 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 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 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15. 세탁물 처리 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 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 을 위탁처리하 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 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 을 위탁처리하 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 여도 된다)				

16. 시체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17.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1 (의료폐기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의료폐기물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의료폐기물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8. 자가발전시설	1	1	1				
19. 구급자동차	1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20. 그 밖의 시설	<p>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p> <p>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p> <p>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p>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1. 입원실

-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 나. 입원실의 면적(벽·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삭제
- 라.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에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 마.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바.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카목에 따라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사.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

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아.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체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체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술실

-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격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수술실 설치 세부기준

• 공기정화설비 기준

단계별 수술	공기정화설비 기준
< 감염* 고위험도 수술 > ① 뇌혈관수술 ② 개두술 ③ 심혈관수술 ④ 이식수술 ⑤ 면역기능 감소환자(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 장기투여 환자) 수술	• HEPA 필터 사용(KS B6740 준수) • 층류(laminar flow) 환기시스템** • 시간당 20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 감염 중등도위험도 수술 > ① 개복술 및 복강경수술 ② 개흉술 및 흉강경수술 ③ 관절치환술 및 사지관절수술 ④ 인공삽입물을 사용하는 척추수술 ⑤ 사지접합수술 및 유리피관수술 ⑥ 양악수술 및 턱관절수술 ⑦ 안구 및 안와 내용적출술, 안와감압술, 안구 내용제거술 ⑧ 내이수술 ⑨ 악성종양절제술	• HEPA 필터 사용(KS B6740 준수) •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 감염 저위험도 수술 > ① 이식수술 중 인공와우이식수술 ② 개복술 또는 복강경수술 중 서혜부 탈장수술, 충수 절제술, 제왕절개수술 ③ 고위험도 및 중등도위험도에 속하지 않는 수술	• KS B6141의 계수법으로 95% 이상의 고성능필터 사용 •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 외부공기 유입의 경우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물 구조상 외부공기 유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다만, 건물증개축,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 시 등에는 적용함

* 감염 위험도 수술이란 수술 후 감염율이 높은 수술이 아니라, 감염되었을 경우 위험인 수술을 말함

** 층류(Laminar flow) 환기시스템 : 수술대 상단에서 아래 방향으로 일방향 층류 급기, 적어도 2개의 멀리 떨어진 배기구를 바닥에서 높이 200mm 이상의 벽 하단에 설치

- 수술실 시설 기준 중 “공기정화설비” 이외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수술실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수술 중 응급 등으로 인한 추가 또는 상위 위험도 수술로 전환할 경우 ‘단계별 수술 범위’ 적용 예외를 인정함
- * 예) 부분 마취수술 → 전신 마취수술 전환, 또는 수술 중 응급 수술 전환 등

• 수술실 운영 기준

- 복도 및 주변실 대비 양압 설정
- 급기되는 모든 공기는 공기정화필터를 거칠 것
- 실내 재순환 냉난방기 사용 불가. 단, 실내 재순환 냉난방기 중 급기구에 MERV14 이상의 고성능 필터 탑재 또는 상시 소독 및 청소가 가능한 구조의 냉난방기(복사 냉난방패널 등)는 사용 가능
- 정기적인 공기정화설비 관리(필터교체 등)
- 수술실 내 손씻기 시설, 개수대 등 설치 금지
- 기구,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환자의 통행 외에는 수술실 문은 닫아 놓고, 필요한 인력 외에는 수술실에 드나드는 인력을 최소화
- 수술장에는 수술실 이외에 스크럽공간, 수술준비공간, 환자회복공간, 청결물 보관공간, 오염물 처리 및 오염물 보관공간, 의료진 탈의공간 등을 구비(저위험도 수술의 경우 미적용)

수술실 관련 유권해석

• 수술실을 갖추어야 하는 외과계 진료 과목의 범위?

외과계 진료과목의 범위를 별도 정하지는 않았으나 대한의학회 분류기준에 따라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응급의학과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수술실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 의원으로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신 마취란 어떤 마취를 의미하는지?

전신마취란 주로 외과(外科)의 큰 수술을 할 경우, 일시적으로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온몸의 감각이나 의식을 마비시키는 마취의 한 종류로 환자의 자발호흡을 억제하는 수술이며, 환자의 자발호흡은 유지하면서 통증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정맥(수면)마취는 제외됨

• 수술실이 갖추어야 할 벽면 불침투질이란?

수술실 감염 예방을 위한 불침투성 재질로 그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염원이 침투하지 않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 수술실이 갖추어야 할 멸균수세 및 배수시설이란?

멸균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위생관리를 위한 배수가 가능한 시설을 말함

• 수술실이 갖추어야 할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란?

특정 장치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동 장치(장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갖추면 됨

• 의원급 수술실 명칭 사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국소·부분마취로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법령상 전신마취 수술실과 구분되도록 ‘국소·부분마취’ 등의 용어를 포함하여 수술실 명칭 사용이 가능함

* 전신마취가 아닌 경우 수술실 명칭 사용을 금지한 기 유권해석 변경

* 환자안전을 위해 국소·부분마취의 경우도 응급장비, 예비전원장치를 갖추도록 권고

4. 응급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産室)이나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급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임상검사실

임상검사실은 자체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6. 방사선 장치

가. 방사선 촬영투시 및 치료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危害) 방호 시설(防護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방사선 사진필름을 현상·건조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조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방사선 사진필름을 판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판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7. 회복실

수술 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 처리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물리치료실

물리요법을 시술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 재활훈련, 환자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한방요법실

경락자극요법시설 등 한방요법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요법에 의하여 치료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병리해부실

병리·병원에 관한 세포학검사·생검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1. 조제실

약품의 소분(小分)·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한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의2. 탕전실

-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나.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바.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사.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2. 의무기록실

의무기록(외래·입원·응급 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소독시설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4. 급식시설

- 가.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 보관, 식기 세정, 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급식 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탈의실 및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6. 시체실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8. 자가발전시설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9. 구급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소통·산소호흡기와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어야 한다.

20. 그 밖의 시설

가.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의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별표 3 제20호나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층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사로 규격에 맞아야 한다.

라. 요양병원의 복도 등 모든 시설의 바닥은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환자가 이동하기 쉽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요양병원에 출입구·문, 복도,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마. 요양병원의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요양병원의 욕실

- 1)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여야 한다.

사.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치과의사	의사의 경우와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같음	
한의사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한방병원과 같음
조산사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종합병원과 같음(산부인과가 있는 경우에만 됨)		종합병원과 같음(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경우)		병원과 같음		
간호사(치과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한방병원과 같음

□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

의료기관 종류		약사 정원
상급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300~500병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300병상 미만	1인 이상의 약사
병원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30병상 이상 치과병원		1인 이상의 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한방병원		1인 이상의 한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한약사를 둘 수 있다.
요양병원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 비교: 약사 수의 산정 시 그 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 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3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1)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임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
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 신체기관명의 경우에도 특정 용어가 신체의 일부인 코, 눈, 무릎 등을 지칭하여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로 바람직하지
아니함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음
-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음
 - ※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음
- 부속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함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 가능함
 -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
 -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진료시간 및 진료일
-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음

○ 옥외광고(간판) 명칭표시 방법

- ▶ 신고(허가)된 의료기관 명칭 이외의 표시금지
- ▶ **의료기관 종류 명칭의 글자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가능**
-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 표시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글자의 가로 및 세로 길이의 각 1/2 이내로 표기
- ▶ **명칭표시 불인정 사례**

고 유 명 칭	의료기관 종별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기관명,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다만,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의료기관 명칭에 표시하면서 해당 전문과목과 직접 관련된 신체명에 한해 제한적으로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외국어로만 구성(한글 미표기) · 개설자의 전문과목 이외 다른 전문과목을 의료기관 명칭에 표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inic · medica · hospital · 의료센터 · 종합진료 · 의료원 · 의원 강동점

4 비급여 진료비용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음.
 -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함
 -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에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하여야 함
-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¹⁾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함
 -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여야 함.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함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1) [별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참고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야 함. 이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함

-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함
 - 위반시 의료법 제92조제2항제2호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 의거하여 1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함
 - 위반시 의료법 제92조제2항제3호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 의거하여 1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관련 안내

- ▶ 상, 하반기 연 2회 시행 * 의원급은 연1회 (5월)만 보고
- ▶ 보고항목, 범위, 방법 등 세부내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전 안내
-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비급여관리실 ☎033-436-2040

5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작성·교부

1) 진단서 등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함)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음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함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음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
- 발급 대상
 - 원칙적으로 환자에게만 발급
 - 환자가 사망, 의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발급 가능, 위의 대상이 모두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에게 발급 가능
 - 검안서에 한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교부 가능
- 예외 사항
 -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재진찰 없이 사망진단서 교부 가능
- 진단서 발급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 법적 대리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권한자가 요구하는 경우
 - 의학적 판단에 반하는 내용(허위기재)을 요구하는 경우

2)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하여야 함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약제의 내용·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
 - 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조제 연월일
- 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함
 -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음
 -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기재사항을 적은 후 서명(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함
 -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질병분류기호(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함)
 -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함)분량·용법 및 용량
 -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음
-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
 -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지, 특정연령대 금지 또는 임부금지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응급환자 및 조현병(調絃病)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4. 입원환자,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조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6. 감염병 예방접종약·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7.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치과의사가 그 업무(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지역 주민에 대한 외래 진료 업무는 제외한다)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유공자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9.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10.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의무경찰과 「형집행법」 및 「군형집행법」에 따른 교정시설, 「보호소년법」에 따른 보호소년 수용시설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11.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보건소·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만 해당한다)
12.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1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진료기록부 등

1)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 [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할 것임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 전자의무기록
 -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음
 -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함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 전자서명이 있는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
 -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과 관련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 잠금장치

-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제1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저장장비 또는 제3호에 따른 백업저장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동작 여부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장비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감시 장비
 - 재해예방시설 -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진료기록부

- 의료법 제22조 규정한 “진료기록부”
 - 사망진단서, 퇴원요약지, 응급실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중환자실기록지, 방사선관독지, 진단의학과검사지, 의사지시지, 협진의뢰서
- 진료기록부 작성시 의사가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음
 -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
 -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 진료 일시(日時)
 -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간호기록부

-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 투약에 관한 사항
-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 간호 일시(日時)

3)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 환자 명부 5년
 - 진료기록부 10년
 - 처방전 2년
 - 수술기록 10년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 기록 5년
 - 방사선사진(영상 포함)과 소견서 5년
 - 간호기록부 5년
 - 조산기록부 5년
 - 진단서 등의 부분 3년(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음
⇒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함
- 진료기록부는 실제 진료기록부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4) 진료기록 사본발급

- 발급은 의료인, 비의료인 모두 가능
- 제공 방식은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
 - 단,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사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환자의 진료비 미납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 요청자의 본인 확인 불가, 대리인으로서 제출하는 동의서, 위임장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등

7 의료기관 준수사항 및 관리

1) 개설자의 준수사항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 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 의료기관은 환자,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방충·취막기·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3)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4)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
-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침구·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여 사용할 것
-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5)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 위반사례 많은 항목

-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한의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
- 포장에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
- 제3조의2에 따른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한 경우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

6)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 입원치료의 방법

-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하 "호흡기 감염병"이라 한다) 및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등 또는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1인 병실에 입원시키되, 그 1인 병실은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병실이어야 한다. 다만,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방역관이 음압격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음압병실이 아닌 1인 병실에 입원시켜야 하고, 음압병실이 아닌 1인 병실에도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한다.
- 호흡기 감염병 및 제1급 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의 경우에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1인 병실에 입원시켜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한다.
-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하여 입원치료 기간 동안 치료를 위한 감염관리가 가능한 병원 내 구역을 제외하고는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 입원치료 중인 사람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 환자의 진료 시에는 1회용 의료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해야 하고,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 입원치료의 절차 등

-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감염병환자등을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입원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
- 의료기관등의 장 및 해당 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치료가 끝나 입원치료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입원치료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 없이 입원치료의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정보 누설 금지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 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록 열람 등

-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 기재·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 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해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하게 할 경우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9) 보고와 업무검사 등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0) 담합행위 금지

○ 담합행위

-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

○ 유사 담합행위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나 암호로 적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 제25조에 따른 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의약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감독하여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와 약국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일한 건물 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 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구분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세부 항목별로 비용 단가, 실시·사용횟수, 실시·사용기간 및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하되, 급여대상의 경우에는 세부 항목별로 본인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거나 1일당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계산서·영수증 부분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3) 세탁물 처리

-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세탁물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2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탁물 구분

종류	상세 구분
의료기관 세탁물	<p>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세탁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 의류 : 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등 ·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튼, 썬우개류, 수거자루 등
오염 세탁물	<p>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기타세탁물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
일반세탁물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

○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해서는 안되는 **세탁금지** 세탁물

-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 마스크·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 세탁물 처리방법: 세탁물처리시설에서 자체처리 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 세탁물 처리기준

-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처리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일반세탁물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기관은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혹은 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 의료광고

1)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2) 의료광고 금지 및 기준

○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 제56조

※ 의료인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치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의료법시행령 제23조

※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신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신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내광고 하는 것
-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 다만,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의료광고 내용별 체크리스트

▶ 의료광고의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 의료광고를 할 수 있으며, 광고 게재 시 광고 주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함. 	
▶ 의료기관(중별) 명칭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법에 근거하여 보건소에 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의료기관 명칭으로 광고를 게재하되, 축약 시에는 소비자의 오인·혼동 소지가 없어야 함.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광고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문의인지 확인해야 함. 	
▶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병원 지정사실 등에 근거한 “전문병원” 또는 “전문”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함.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해당 분야와 기간을 정확히 표기해야 함. 	
▶ 환자유인행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시·수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과도한 진료비 할인 조건 제시” 등 진료비 할인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으로 광고하지 말아야 함. 환자 외 제3자를 유인하는 내용으로 광고하지 말아야 함. 진료비 지원, 선물 지급 등 금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함. 	
▶ 의료광고 금지	① 미평가 신의료 기술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해당하나,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술을 광고하지 말아야 함.
	②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대행사 또는 환자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공고를 하지 말아야 함.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하고, 촬영시기와 부작용을 명시해야 함.
	③ 거짓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증거가 어려운 배타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세계최초, 가장 안전한, 전국 최저가, 완벽해결 등)
	④ 비교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의료인 등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지 말아야 함.
	⑤ 비방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의료인의 진료 방법 등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지 말아야 함.
	⑥ 시술행위 노출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의 수술장면, 환부 사진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영상·사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⑦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등을 눈에 잘 띄게 표기.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며, “통증·부작용 없음”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
	⑧ 과장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치료효과, 의료기관 관련 정보 등을 광고해야 함.

<p>⑨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에 따른 자격·명칭 등을 사용하여 광고해야 함. (광고 시, 법적 근거에 적시된 내용을 정확히 표기.)
<p>⑩ 신문 등 전문가 의견 형태 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신문, 방송, 잡지 등 기사형식을 통해 객관성, 전문성에 대한 오인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의료기관 명칭, 약도, 연락처, 진료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 광고하지 말아야 함.
<p>⑪ 미심의 광고 또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눈)에 해당 될 경우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사전심의 대상이므로 광고하려는 매체의 사전심의 여부를 먼저 확인. • 심의받은 경우 심의필(심의번호) 정보를 정확히 표기. (광고 유형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심의기준에 따른 표시방법 확인.) •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함.
<p>⑫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해외진출법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에 대한 등록 후, 외국어(영어 등)로 구성된 홈페이지 등을 운영해야 함.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진료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함. •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등록한 의료기관의 경우, 면세점·공항·무역항 등에 의료광고 게재 시 각 종별에 따른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p>⑬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및 할인 이전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p>⑭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 보증·추천 광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 내용을 포함하여 광고하지 말아야 함. (단, 의료법상 규정된 인증의료기관,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인증·보증 표시 광고는 가능) •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게재할 경우 인증사항 및 해당 기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4) 의료광고 심의 의료법 제57조, 의료법시행령 제24조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https://www.admedical.org/main.do> ☎ 02)793-4100

■ 대한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https://ad.akom.org/ad/index.html> ☎ 02)2567-5030.5037.5039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https://dentalad.or.kr/main/> ☎ 02)2024-9195

□ 심의대상 의료광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 전광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심의필 번호 표기

- 심의를 받은 광고의 경우 심의필(심의번호) 정보를 정확히 표기해야 함.
- 심의필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유효기간(3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심의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볼 수 있음.

□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

-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이 때 「의료법」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 없이 자율심의기구(의협·치협·한의협)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아울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사전심의를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의료광고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 건강강좌 등 공익광고

※ 2025년 강동구보건소에 의료광고 관련 민원신고된 게시글 분석

- 신고된 의료기관: 총 758개소
- 신고된 게시글: 총 16,156건(신고 민원 854건에 언급된 게시글 URL 수)
- 주요 위반 유형 : 삭제·비공개 글을 제외한 접속 가능한 게시글 9,407건 분석
 - 불법 의료광고 게시물의 과반수 이상(5,674건, 60.3%)이 100% 완치, 부작용 제로, 국내 최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보장성·과장광고 키워드인 것으로 확인
 - 그 외 치료 경험담(2,386건, 25.4%), 가격할인(1,232건, 13.1%), 전후 사진(115건, 1.2%) 순으로 나타남

위반유형	건 수	비율
보장성 및 과장광고	5,674	60.3%
치료경험담	2,386	25.4%
가격할인 및 환자유인	1,232	13.1%
전후사진 무단게재	115	1.2%
계	9,407	100%

5) 의료광고 관련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1판] (2020.7.6.) [\(바로가기\)](#)
-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2024.12.) [\(바로가기\)](#)

9 의료폐기물 관리

1) 의료폐기물의 종류 및 보관기간

의료폐기물 구분	종 류	배출자 보관기간	보관조건	
격리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조직물류와 성상이 같은 경우 전용 냉장시설 (4°C이하)	7일	밀폐된 전용창고	
위해	▶ 조직물류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15일 (차아60일)	전용냉장시설 (4°C이하)
	▶ 병리계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15일	밀폐된 전용창고
	▶ 손상성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칼날, 한방 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30일	”
	▶ 생물, 화학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15일	”
	▶ 혈액오염	폐혈액백,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15일	”
일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감염성 질환자의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15일	”	

*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일반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간주

2) 의료폐기물통 사용시 필수 기재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 의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손상성폐기물
사용개시 연월일	○○○○년 ○○월 ○○일	수거자	처리업체에서 기재

* 사용개시 연월일: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

3) 의료폐기물 관련 Q&A

Q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주요 사례?

- A**
- 포도당, 영양제 등이 담겨져 있던 바이알 병, 앰플 병, 수액 팩, 링거병·혈액등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되지 않은 링거병, 수액 팩, 바이알 병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과 접촉되지 않은 석고붕대, 의료기기 등
 - 건강검진을 위해 수집한 소변 묻은 종이컵
 -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거즈, 솜 등
 - 치과치료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와 의료기기 세척수
 - 구강내 혈액이나 분비물을 닦아낸 탈지면이나 의료기기등에 묻어 있는 혈액등을 닦아낸 탈지면 등은 의료폐기물
 -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분비물, 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석션기로 흡입된 액상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 일반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
 - 피부관리 후 단순히 얼굴에 올려놓은 물이 묻어 있는 거즈나 솜
 - 의료행위 없이 배출되는 신생아실 아기 기저귀, 요양노인 일회용 기저귀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해 적정하게 세탁한 후 폐기한 환자복

Q 환자의 몸에 바른 초음파 젤을 닦은 티슈는 의료폐기물인지?

- A** 초음파 젤 및 티슈에 환자의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 접촉된 경우에만 의료폐기물이고 그 외는 일반폐기물에 해당

Q 의료폐기물을 봉투형 용기에 담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봉투째 배출해도 되는지?

- A**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는 의료폐기물(격리의료, 조직물류, 손상성과 액체 상태 폐기물)외의 의료폐기물은 봉투형 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

Q 의료폐기물인 태반, 치아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인도 가능한지?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인체 조직물은 본인이 요구하면 본인에게 양도하여 공설묘지에 묻거나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인도되어 감염, 환경오염 등 부적정한 처리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도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Q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기는?

- A** ▪ 최초교육: 의료기관 개설 후 1년 이내
▪ 재교육 주기: 최초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10 법정 감염병 관리

1)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감염병

-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 법정감염병 종류

구 분	제1급 감염병 (18종)	제2급 감염병 (21종)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¹⁾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 중등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8. 니파바이러스감염증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21. E형간염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신 고	즉시	24시간 이내

구 분	제3급 감염병 (28종)	제4급 감염병 (24종)
종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쯤쯤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아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7. 엠폭스 28. 매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플루엔자 2. 회충증 3. 편충증 4. 요충증 5. 간흡충증 6. 폐흡충증 7. 장흡충증 8. 수족구병 9. 임질 10. 클라미디아 감염증 11. 연성하감 12. 성기단순포진 13. 침규곤딜롬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18. 장관감염증 19. 급성호흡기감염증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4.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감시방법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 고	24시간 이내	7일 이내

3)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 신고대상

-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신고 의무자



○ 유선신고 방법

- ☎ 강동구보건소 (1급, 결핵) 감염병대응팀 02) 3425-8554, 질병관리청 1339
(2급~4급) 감염병관리팀 02) 3425-8556
- ☎ 팩스: 강동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Fax 02) 3425-7268
- ✉ 이메일: gd2025@gd.go.kr

< 강동구보건소 결핵실 >

☎ 전화 02)3425-6718 ☎ 팩스 02)3425-8618 ✉ 이메일 tbzero@gd.go.kr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신고 방법

☎ 방역통합관리시스템 (<http://eid.kdca.go.kr>) 접속

- ① 사용자 가입
- ② 인증서 등록
- ③ 메뉴(권한/부가정보관리) → 병원체 확인 User(의료기관), 환자감시/병원체신고 User, 환자감시/전수감시 User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표본감시 User 포함)
※ 권한명 '선택' 후 옆 '권한 문의' 번호로 전화하여 승인 요청
- ④ 메뉴에서 감염병 '웹 신고(병의원)' 클릭
- ⑤ 신고서 작성 후 '보고' 클릭

4)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 결핵 검진

- 매년 실시 (건강검진 대체 가능)
-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직하는 경우 → 종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잠복결핵감염 검진

- 결핵환자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매년 실시
- 그 외 직원: 소속된 기간(기관변경 가능) 중 1회 실시

○ 신규 채용자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 문의: 강동구보건소 결핵실 02-3425-6718

5) 감염병 증상별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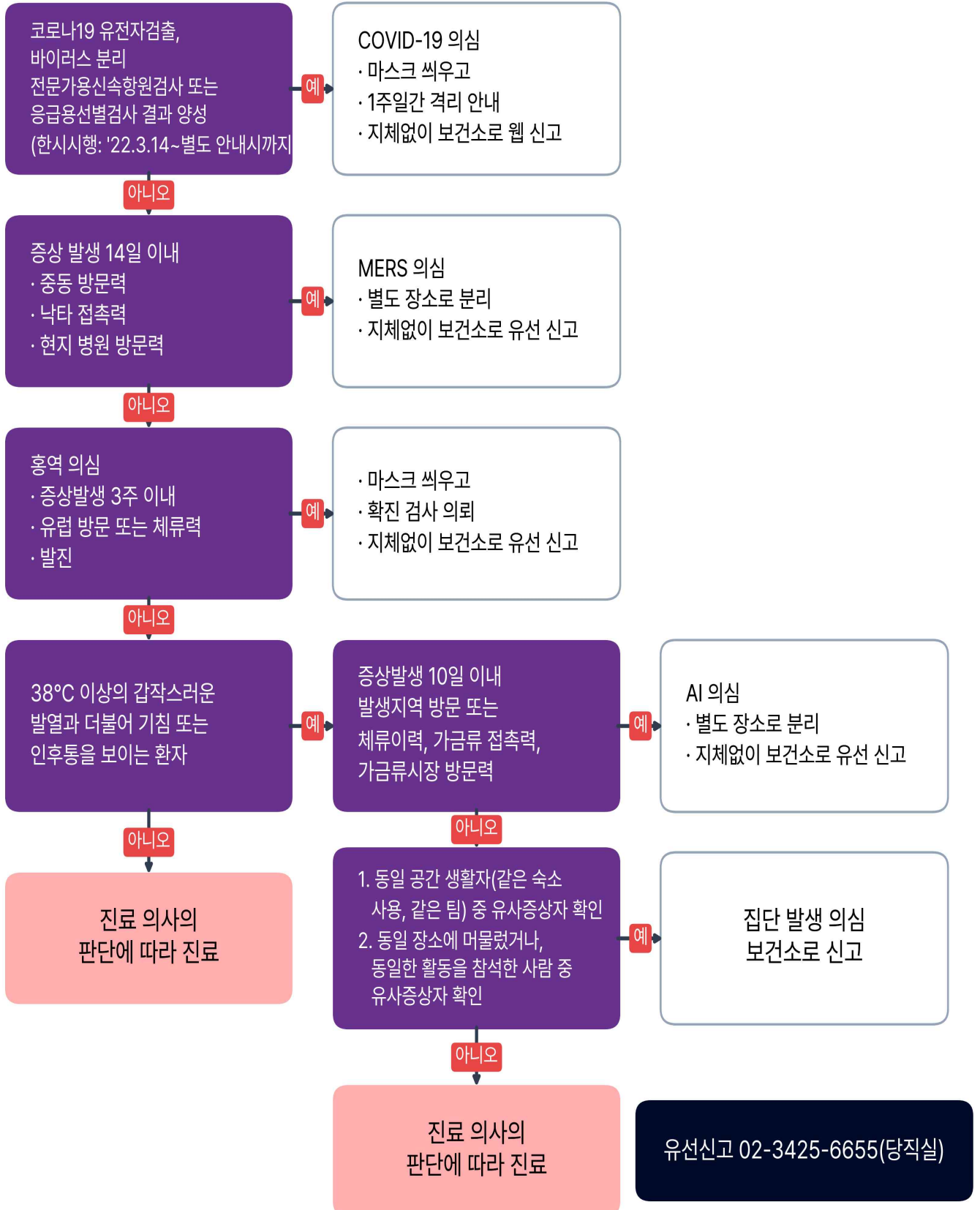
○ 호흡기 주요대상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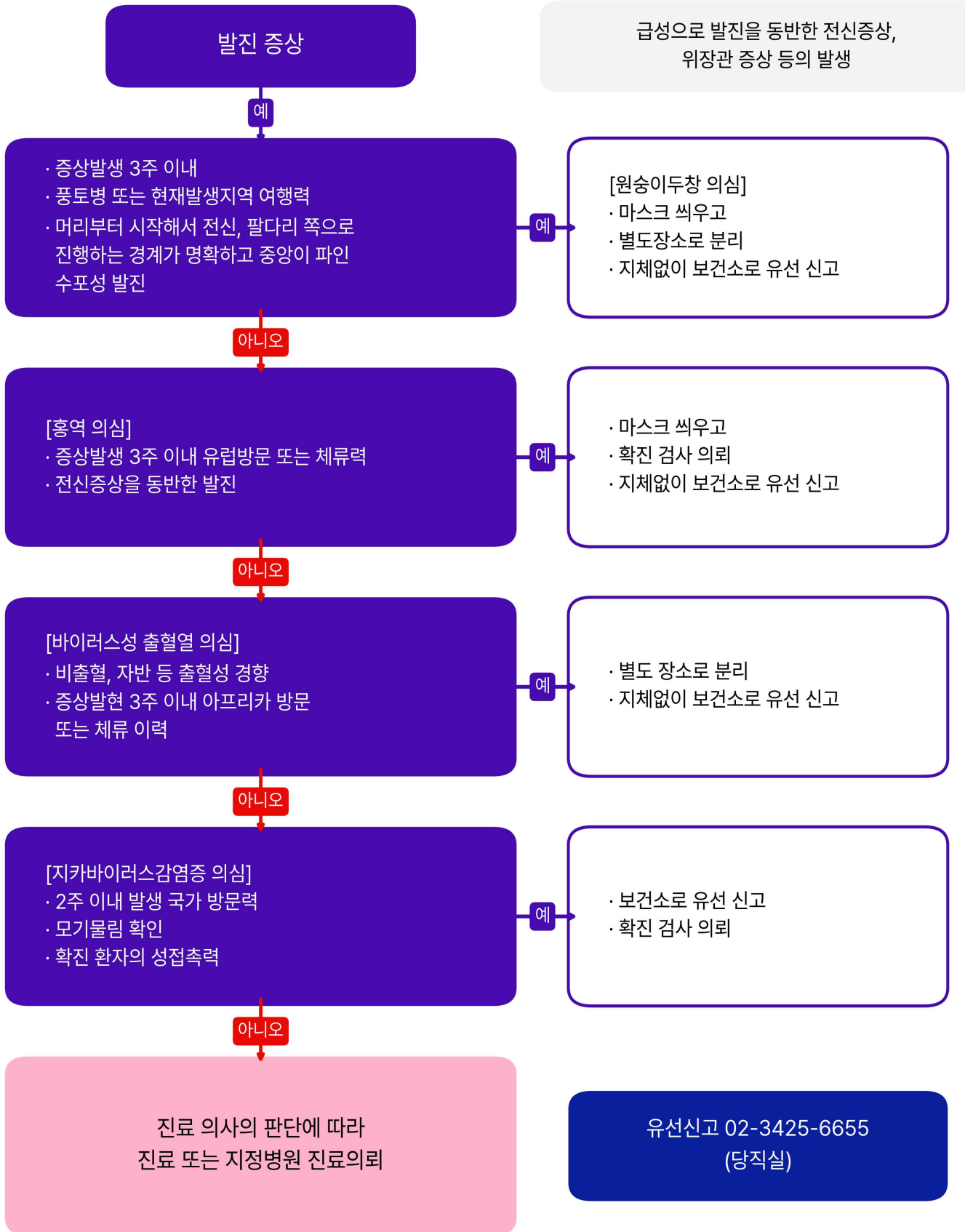
- 중동후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 인플루엔자
- 홍역
- 레지오넬라증
- 결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기타 호흡기감염증 등

○ 피부증상 질환

- 피부발진이 일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종감염병(바이러스성출혈열등)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홍역
- 엡폭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11 의료관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1) 의료관계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 요구를 거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법 제18를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자격정지 2개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 요청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삭제·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경우,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 허 취 소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경고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12개월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신고 한 사항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경 고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거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게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라)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시정명령
법 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는 제외)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법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법 제5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법 제59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

2) 과태료 부과기준 의료법시행령 제45조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과태료 (만원)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 제1항	300
법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 제1항	300
법 제33조제5항(법제82조제3항 준용 포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 제3항	50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92조 제1항	50~300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 제1항	50~100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 제3항	50
법 제40조제1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 제3항	50~80
법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92조 제3항	50~100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92조 제3항	80
법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법 제92조 제2항	100~200
법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법 제92조 제2항	100~200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2조 제2항	100~200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 제3항	30

II 마약류 관리

1 마약류취급자 교육

- 1) 마약류 취급자는 허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필수교육(2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마약류 보관없이 원외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도 해당, 공동 개설자도 대상에 포함
- 2)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 3) 교육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www.nims.or.kr>)로그인(회원가입) → 교육센터
 → 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 동영상(의무교육) → 동영상(의무교육)명: “강동구” 검색
 → (서울시 강동구①②)

2 마약류 취급시 유의사항

1) 마약류 취급 보고

- 대상: 마약류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등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고대상 마약류
 - 중점 관리대상 마약류: 마약, 프로포폴제제
 - 일반 관리대상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중점관리대상 제외)
- 마약류 보고의 종류
 - 구입/판매: 마약류를 거래업체로부터 구입/판매
 - 투약/조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약, 약제실에서 마약류를 조제
 - 양수/양도: 반품, 거래 취소 등의 사유로 양수/양도
 - 폐기: 마약류 폐기를 신청하여 폐기한 경우
 (사고마약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재고관리 또는 보관하기 곤란 등)
- 마약류 보고 기한
 - 중점 관리대상 마약류: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일반 관리대상 마약류: 취급한 달의 다음날 10일 이내
 - 변경보고: 취급보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2)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 사고마약류의 정의
 - 재해로 인한 상실: 시·도지사의 확인서 첨부

- 분실 또는 도난: 수사기관의 확인서 첨부
- 변질·부패 또는 파손
- 보건소 보고사항
 -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건소 신고
 - 시·도지사, 수사기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 변질·부패 또는 파손인 경우 보건소에 폐기 신청
 - 폐기 후 폐기내역 공문 내용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폐기보고
-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 폐기마약류 내역 작성시 제조번호(사용기한)별 작성
 - 폐기신청서 약품수량과 실재고량 확인하고 보건소로 가져올 것
 - 폐기신청서 처리 후 공문을 근거로 마약류관리시스템에 폐기 보고(폐기공문은 2년 동안 보관)
- 잔여마약류 폐기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자체폐기하고, 폐기근거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자체폐기 정보관리에 등록(입회자 2인, 폐기전후 사진 2년보관)
 - 투약·조제하고 남은 마약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폐기

3) 마약류의 저장

-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
- 마약류 저장시설은 마약류취급자 업소 내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 마약류저장시설은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
 - 마약: 이중잠금 장치가 된 철제 금고
 - 향정신성의약품: 잠금장치가 된 장소
 - 냉장보관: 아티반주, 케타민주 등(냉장고에 잠금장치)
-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주1회 이상 점검 작성(2년 이상 보관)

3 마약류 처방시 유의사항

1) 환자 투약내역 조회

- 대상: 펜타닐 정제, 패치 처방시(의무)
 - 예외: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 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2) 자가처방 금지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4 폐업시 유의사항

1)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 제출 의무화

-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내용: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격상실자(폐업 등) 마약류 처분

-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규칙 제24조
- 의료기관 폐업시: 마약류를 양도 혹은 보건소에 폐기신청 하여야 함.
- 처분기한: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III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 진단용 발생장치 -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 진단용 엑스선 장치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
-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방사선 방어시설

방사선의 피폭(피폭 :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사선 차폐 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를용기구

방사선 관계 종사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안전관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및 압실, 현상기, 방사선필름 카세트, 산란 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엑스선사진 관찰대 등 진단 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방사선구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週當) 0.3mSv (30m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되어진 곳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의무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함
-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함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기준

종 류	신고기한	구비서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사용일 3일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별지 1호서식)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별지 6호 서식]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증명서 원본 (별지 3호 서식)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설치하는 경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별지3호 서식,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입차사실 증명자료 사본
양도, 이전, 폐기	사유발생 후 45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 신고증명서 원본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신고 경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신고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전신고 경우)
사용중지	사용중지일 부터 3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 신고증명서 원본
신고사항 변경	명칭, 개설자 변경 장비변경사항 등 의료기관 이전(관내) - 사용 3일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 신고증명서 원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관내 이전의 경우만 해당)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내 이전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경신고	안전관리 책임자 변동 후 1개월 이내 / 종사자변동 후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별지 제19호서식)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신고

양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경우에만 양도신고가 가능함. 단 기기가 장소를 이전하지 않고 개설자만 변경되는 경우와 폐업 동일장소에서 인수한 경우는 유통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양수자가 되어 양도신고가 가능함

※ 의료기관이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고 직접 매매를 할 수 있음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

방사선 발생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중지신고를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또는 제어장치를 수리하거나 X-선관을 교체하는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 검사기준일 전후 31일 이내</p> </div>
방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설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계할 때에 설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動作負荷)를 초과한 경우

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 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 방사선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및 교육
 - 선·해임한 경우 1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고(최초 선임은 설치, 사용신고에 포함)
 - 선임교육: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수
 - 보수교육: 선임교육 이수 후 3년 주기로 이수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정기 건강진단
 - 업무 종사 전 건강진단 및 2년마다 건강진단 실시
 - 선량한도초과자는 즉시 및 6개월마다 건강진단과 안전조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 및 보존

작성기관	기록사항	보존기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기록	5년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해당 종사자 퇴직 때까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및 장치 점검기록	해당 장치의 철거 후 1년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해당 시설의 철거 후 1년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	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해당 장치 및 시설 철거 후 1년

6)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 직무

-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 및 평가
-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로치
-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 장치의 신고,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방사선 방어시설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

○ 자격기준

의료기관의 종류	선임기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과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치과병원만 해당) ·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치과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의사 · 방사선사 ·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

7)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질병관리청 '25.1.2. 기준

○ 검사기관(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방어시설)

등록번호	기관명	소재지	전화	FAX
검사 22-1호	육군 제2879부대 (자체검사)	-	-	-
검사 22-2호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166번 길 46 금강펜테리움IX타워 8층 76호	1577-2720	02) 470-3767
검사 22-3호	(재)한국의료기기평가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 분당테크노파크 E동 301호	031)780-237 7	031)780-23 88-9
검사 24-1호	(재)한국의료기기검사원 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 분당테크노파크 D동 311호	1588-4816	031) 701-8917
검사 24-2호	(주)중앙기술검사원	대구시 북구 동변로 91, 4층	1588-6238	1522-4212

※ 육군 제2879부대는 자체검사기관으로서 민간 의료기관은 검사하지 않음.

※ PET-CT의 PET부분 검사기관 :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재)한국의료기기평가원, (재)한국의료기기검사원
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 (주)중앙기술검사원

※ 진단용방사선안전원 검사분야 : 진단용엑스선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유방촬영용장치, 방사선방어시설

○ 측정기관(개인피폭선량)

등록번호	기관명	소재지	전화	FAX
측정 22-1호	한일원자력(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45, 동영벤처스텔 301호	031) 443-4284	031) 443-4289
측정 22-2호	(주)오르비텍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 가산디지털엠피아이 8층	070-4044-8 800	070-4032-19 00
측정 22-3호	(주)제브 서울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38길 13	02) 433-3626 (내선 1101)	02) 439-6552
측정 22-4호	(주)일진라드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11길 36	02) 541-0975	02) 541-0976
측정 22-5호	라토즈이앤지(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402호	070- 7862-4844	02) 6280-2176

2 특수의료장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특수의료장비의 종류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 혈관조영장치
- 투시장치
- 이동형 투시장치(C-Arm 등)
- 방사선치료계획용 CT
-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2) 등록 및 설치사용 신고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규칙 제2조**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특수의료장비 운용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타 의료기관과 공동활용시, 유방 촬영용 장치는 제외)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3) 특수의료장비 운영인력기준 및 시설기준

○ 운용인력기준

항목	종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
	용도구분		전신용, 두부 전용 두부·척추·관절 전용 척추 전용, 관절 전용 척추·관절 전용 두부·척추 전용 두부·관절 전용	전신용 비조영증강 전신용 두부 전용 척추 전용 두부·척추 전용
운용인력 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	전속 1명 이상	비전속 1명 이상

○ **시설기준** - 시 지역(광역시외의 군 포함)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음 •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함
유방 촬영용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4) 등록사항 변경

○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인력등록사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시설등록사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 •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IV 건강검진 등 신고

1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1) 기업체 방문검진 - 회사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직원 대상 건강검진 실시
- 2) 학교기관 방문 검진 -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이동식 검진 실시
- 3) 지역사회 순회 검진 -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지역주민 다수 대상 검진
- 4) 기타 의료기관 외부 장소에서의 집단 건강검진 전반 (무료검진 포함)

2 신고 절차

- 준비: 「건강검진 등 신고서」 작성
- 제출: 검진 10일 전까지 보건소에 신고서 제출 (정부24 등 온라인 신고 가능)
- 보건소 검토: 7일 이내
- 신고확인서 발급: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를 수령한 후 외부 건강검진을 실시

3 자주 묻는 질문

- 우리 병원 건물 안에서 검진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네, 맞습니다. 의료기관 밖(외부 장소)에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 신고 후 검진 날짜나 장소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지체없이 보건소에 변경신고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지역보건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행정처분과 연계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검진일 10일전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검진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 1) **검진기관 지정이란?**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암검진 등)을 실시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행정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지자체 보건소가 협력하여 수행

V 각종 신고 서식 모음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서.....	64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69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74
<input type="checkbox"/>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75
<input type="checkbox"/>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 전송·송부 동의서	76
<input type="checkbox"/>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77
<input type="checkbox"/>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78
<input type="checkbox"/>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79
<input type="checkbox"/>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80
<input type="checkbox"/>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81
<input type="checkbox"/>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 겸임) 신고서 ...	82
<input type="checkbox"/>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83
<input type="checkbox"/>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84
<input type="checkbox"/>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86
<input type="checkbox"/>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87
<input type="checkbox"/>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변경통보서 ...	88
<input type="checkbox"/>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89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등 신고서	90
<input type="checkbox"/>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	91
<input type="checkbox"/>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품목	92
<input type="checkbox"/>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서	93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1. 7.>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5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의료기관 현황]

의료 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요양기관기호(신규 개설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설립 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 병원	06 기타
		[] 시도 립	[] 시군 구립	[] 지방 의료 원	[] 기타 공립	[] 학교 법인	[] 특수 법인	[] 종교 법인	[] 사회 복지 법인	[] 사단 법인	[] 재단 법인	[] 회사 법인	[] 의료 법인	[]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	[] 사회적 협동 조합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 기호를 적습니다(종류: 01의원 02치과의원 03한의원 04조산원).
2.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에 √ 표시합니다.
3. 요양기관기호란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신고인(개설자) 현황]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자격 종류	자격 번호	주소		연락처	
개설자 (대표자)							집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 설 자			
개설자 부재로 인한 대진의 등 신고			
진료과목			
시 설			
명 칭			
의료인 수			
소재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5쪽 중 2쪽)

[시설현황①]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 입원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		격리 병실	임종 실	구분	수술 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 치료실	임상 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개방	폐쇄										
병실												유 []	유 []	유(내[], 외[])
병상												무 []	무 []	무(원외공동 이용[], 무[])
면적 (㎡)							총 면적 (㎡)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시설현황②]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무 []	의무기록실	유 [] 무 []
급식시설	유 [] 무 []	소독시설	유 [] 무 []	자가발전시설	유 [] 무 []
방사선장치	유 [] 무 []	시체실	유 [] 무 []	장례식장	유 [] 무 []
병리해부실	유 [] 무 []	한방요법실	유 [] 무 []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유 [] 무 []

[인원현황] 총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제외)

구분	직종	총 명		구분	직종	총 명		
		계	명			계	명	
01	의사	계	명	약사	계	명	13	
		일반의	명		07	약사	명	14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치과위생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영양사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조리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사회복지사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명
							안경사	명
							기타 종사자	명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진의 현황] 총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대진기간	부재자 (개설자)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임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3쪽)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 진료과목에 √ 표시합니다.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01	내과	11	소아청소년과	21	재활의학과	50	구강악안면외과	61	통합치의학과
02	신경과	12	안과	22	핵의학과	51	치과보철과	80	한방내과
03	정신건강의학과	13	이비인후과	23	가정의학과	52	치과교정과	81	한방부인과
04	외과	14	피부과	24	응급의학과	53	소아치과	82	한방소아과
05	정형외과	15	비뇨의학과	25	직업환경의학과	54	치주과	83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06	신경외과	16	영상의학과	26	예방의학과	55	치과보존과	84	한방신경정신과
07	심장혈관흉부외과	17	방사선종양학과			56	구강내과	85	침구과
08	성형외과	18	병리과			57	영상치의학과	86	한방재활의학과
09	마취통증의학과	19	진단검사의학과			58	구강병리과	87	사상체질과
10	산부인과	20	결핵과			59	예방치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인 면허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지방자치단체명:

2. 이용목적:

3.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 목록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 고시)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행 정 정 보 명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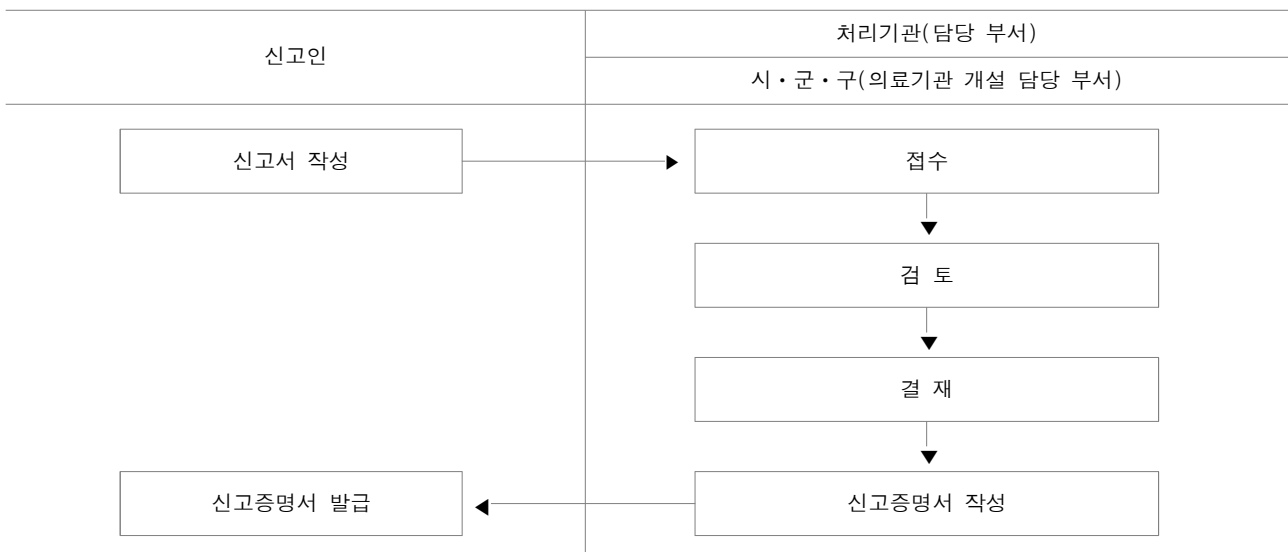
전 화 번 호 :

유의사항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4.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 목록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고시)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시설현황①]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 입원실	정신건강 의학과 입원실		중환자실			격리 병실	무균 치료 실	임종 실	구분	수술 실	회복 실	응급 실	물리 치료 실	임상 검사 실	조제 실	탕전실
			개방	폐쇄	소계	성인 소아	신생 아											
병실											병실					유 []	유 []	유(내 [], 외 [])
병상											병상					무 []	무 []	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면적 (m ²)											총 면적 (m ²)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시설현황②]

구분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1인실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시설현황 ①과 별도로 기록합니다. 2. 음압격리병실은 ①의 격리병실에 포함된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소계	1인	다인	소계	성인 소아	신생아	소계	음압격리 병실	격리병실	
병실										
병상										

[시설현황③]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무 []	의무기록실	유 [] 무 []	한방요법실	유 [] 무 []
급식시설	유 [] 무 []	소독시설	유 [] 무 []	자가발전시설	유 [] 무 []	화장실	유 [] 무 []
방사선장치	유 [] 무 []	시체실	유 [] 무 []	장례식장	유 [] 무 []	휴게실	유 [] 무 []
병리해부실	유 [] 무 []	욕실	유 [] 무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유 [] 무 []	식당	유 [] 무 []

[인원현황] 총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건강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그 밖의 종사자	명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 진료과목에 √ 표시합니다.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01	내과	11	소아청소년과	21	재활의학과	50	구강악안면외과	61	통합치의학과
02	신경과	12	안과	22	핵의학과	51	치과보철과	80	한방내과
03	정신건강의학과	13	이비인후과	23	가정의학과	52	치과교정과	81	한방부인과
04	외과	14	피부과	24	응급의학과	53	소아치과	82	한방소아과
05	정형외과	15	비뇨의학과	25	직업환경의학	54	치주과	83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06	신경외과	16	영상의학과	26	예방의학과	55	치과보존과	84	한방신경정신과
07	심장혈관외과	17	방사선종양학과			56	구강내과	85	침구과
08	성형외과	18	병리과			57	영상치의학과	86	한방재활의학과
09	마취통증의학과	19	진단검사의학과			58	구강병리과	87	사상체질과
10	산부인과	20	결핵과			59	예방치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의료기관 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인 면허증,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지방자치단체명:

2. 이용목적:

3.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 목록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 고시)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행 정 정 보 명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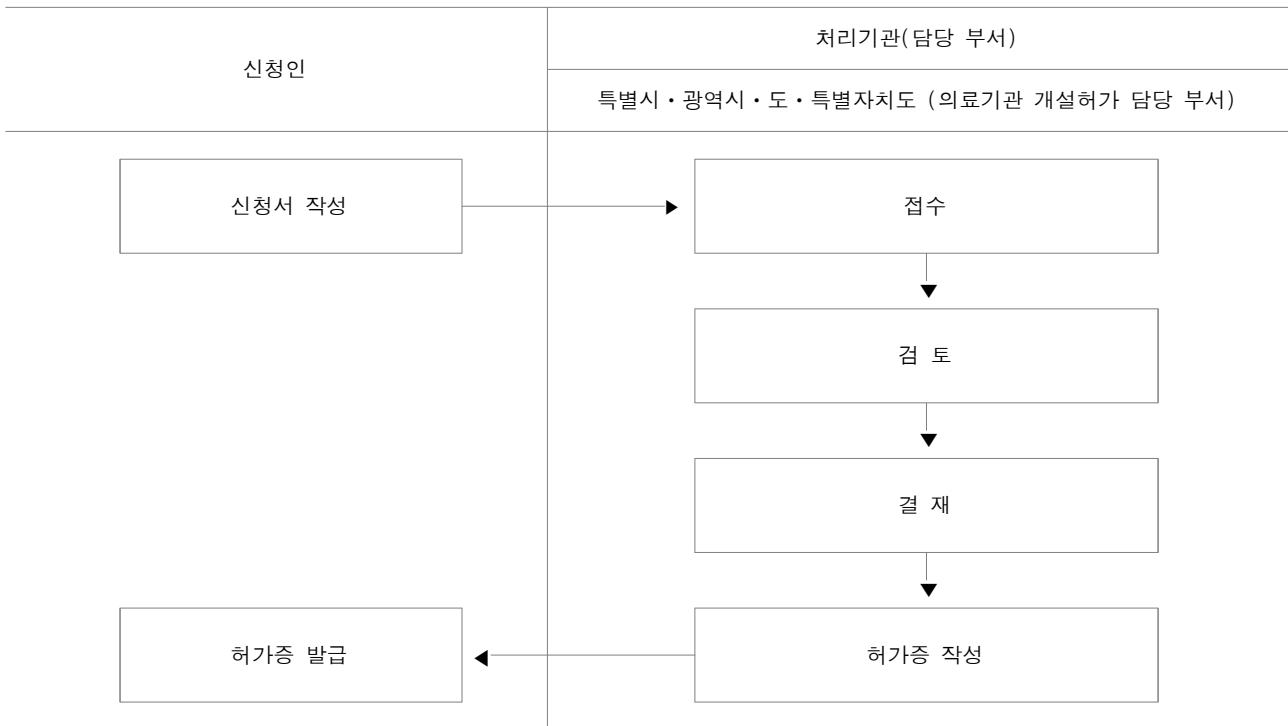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않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4.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5.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 목록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고시)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6. 30.>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개설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① 종류	
	의료기관 소재지	② 요양기관기호	
휴업기간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 휴업 [] 폐업 []	폐업일(최종진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재개업일(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에 "√" 표시)	01. 대표자 사망[] 02. 고령(건강상)[] 03. 학업목적[] 04. 경영상[] 05. 취업[] 06. 종류변경(의원↔병원)[] 07. 면허취소[] 08. 업무정지[] 09. 그 밖의 사유[]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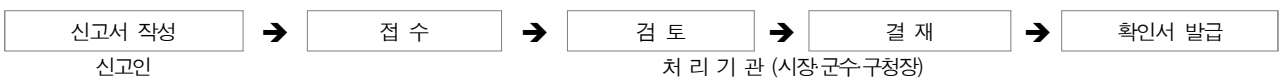
작성 방법

-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 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일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정신병원 07의원 08치과의원 09한의원 10조산원
-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유의 사항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 허가를 받지 않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처리 절차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3. 2.>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의료기관 개설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보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관할 보건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3.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의료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5. 6. 20.>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송부 동의서

환자 본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 소	
신청인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생년월일
	주 소	
동의 내용	01. 열람 [] / 02. 사본 발급 [] / 03.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전송·송부 [] (동의할 사항 []에 “√” 표시)	
	의료기관 명칭	전송·송부 받을 의료기관 명칭(진료기록 전송·송부의 경우만 적습니다)
	진료기간	
	발급(전송·송부) 사유	
	발급(전송·송부) 범위(환자 본인이 직접 적습니다)	
	예시) 진료기록부 사본, 처방전 사본, 수술기록 사본,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의 사본,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간호기록부 사본, 조산기록부 사본, 진단서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등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은 위 신청인()이 「의료법」 제21조제3항 및 제21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제2항 및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위의 동의 내용과 같이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또는 전송·송부를 요청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4. 11. 7.>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수임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전화) (전자우편)	위임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전화) (전자우편)	
	주 소	

위임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자필서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1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설치 및 사용 신고서

[] 재사용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	-----	-----	----------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개설자 성명	개설자 생년월일
	개설자 전자우편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안전관리책임자 생년월일
	안전관리책임자 전자우편	

설치인	설치자 성명	회사명
	전자우편	
	설치일자	전화번호

신고 대상 장치 내용	용도	상태 [] 신품 [] 중고품
	형태	판매회사 및 판매자
	[] 이동형 [] 거치형	(판매회사 및 판매자는 중고품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적용배제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월 일	검사회 사 및 검사자	제조 번호	제조 연월 일	제조사	제조 국	장비 번호	허가 (신고) 번호	도입 형태	구입 일	구입 금액	의료장비 바코드
	X-선 튜브	제어 장치	고전압 발생장치												

1. 장비번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2.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도입 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4.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
5. 의료장비 바코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 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1.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이전 변경: 3일)
신고인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요양기관기호	팩스번호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여백부족 시 별지 사용)		(여백부족 시 별지 사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1. 7.>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	-----	-----	----------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자 성명	개설자 생년월일
	개설자 전자우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근무시작 (종료)일	담당업무	의료인 등의 종별 (면허(자격)번호)	신고사유		
					신규	퇴사 또는 정지	기존

안전관리책임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선임·해임 일자	사유	면허(자격)번호	교육일자
선(겸)임						
해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10.1.22>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소 속		면허종별	
성 명		근무시작일	
검사일자			

문진 사항	
방사선 피폭 증상의 유무	유 무
방사선 피폭 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 장소·작업 내용·작업 기간·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유 무
그 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검사항목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Hb)	
말초혈액 중의 적혈구 수(RBC)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WBC)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의료법」 제37조제2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함.

년 월 일

담당의사명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장

직인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7.>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	-----	-----	----------

특수 의료 장비	명칭	용도	모델명/형식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제조사/제조국	신품/중고
	의료장비 바코드		장비번호	허가(신고)번호
	도입형태	구입일	구입금액	

- 의료장비 바코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 장비번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 도입 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

의료 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주소	종류
	전화번호/FAX	설치장소
	개설자성명	개설자 생년월일
	개설자 전자우편	

특수의료장비 인력 현황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성명	면허(자격)종류	면허(자격)번호		근무 시작일
영상의학과 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 시작일
방사선사	성명	면허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 시작일

※ "면허(자격)종류"는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로 구분하며, "전속", "비전속"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특수의료장비 시설현황

총 병상수	병상	○ 자체 병상수 : () 병상 ○ 공동활용 병상수 : () 병상
-------	----	--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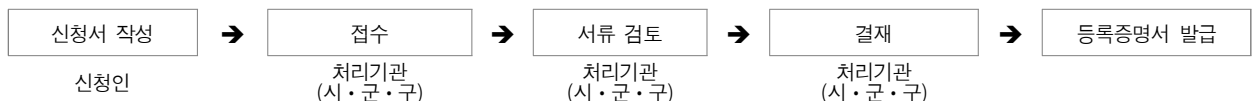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 사항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 절차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7.>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특수의료장비 명칭	<input type="checkbox"/>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input type="checkbox"/>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	--

특수의료장비 설치 의료기관 정보

의료기관명	개설자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 기호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 정보

의료기관명	개설자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 기호

본 의료기관은 허가(신고) 병상 ()병상의 의료기관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위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공동활용하려는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8. 19.>

건강검진 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의사·치과의사·한의사)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명	소속기관의 대표자 성명	소속 요양기관 기호					
신고 내용	목적							
	일시	장소						
	대상	건강검진 등 예상인원 수						
	내용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외의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 [] 순회진료 등							
	수행인원 수: 총 () 명							
	의사	명	치과의사	명	한의사	명	간호사	명
	간호조무사	명	치과위생사	명	임상병리사	명	방사선사	명
원무행정요원	명	기타	명					
건강검진 등 실시 항목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검진 등의 실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의료인 전원이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백상지(80g/m²)]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품목

연번	품목명[등급]	연번	품목명[등급]
1	이식형 심장박동기[4]	26	헤파린 사용 인공 혈관[4]
2	이식형 심장박동기 전극[4]	27	윤상 성형용 고리[4]
3	혼합재질 인공심장 판막[4]	28	이식형 인슐린 주입기[4]
4	생체재질 인공심장 판막[4]	29	유헬스케어 이식형 인슐린 주입기[4]
5	비생체재질 인공심장 판막[4]	30	이식형 말초신경 무통법 전기 자극장치[4]
6	이식형 심장충격기[4]	31	이식형 보행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4]
7	전동식 이식형 의약품 주입 펌프[4]	32	이식형 요실금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4]
8	실리콘겔 인공 유방[4]	33	이식형 척추측만증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4]
9	이식형 심장충격기용 전극[4]	34	혼수 각성용 미주신경 전기 자극장치[4]
10	인공 측두 하악골 관절[3]	35	경동맥동 신경 자극장치[4]
11	특수재질 인공 측두 하악골 관절[4]	36	이식형 전기 배뇨억제기[4]
12	인공 안면 아래턱 관절[4]	37	척수이식 배뇨장치[4]
13	특수재질 인공 안면 아래턱 관절[4]	38	심장박동기 리드 어댑터[4]
14	대동맥 그래프트 스텐트[4](복부대동맥 및 흉부대동맥 스텐트그래프트에 한함)	39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리 교체 재료[4]
15	심리요법용 뇌용 전기 자극장치[3](이식형에 한함)	40	특수재질 인공 엉덩이 관절[4]
16	발작방지용 뇌 전기 자극장치[4](이식형에 한함)	41	특수재질 인공 무릎 관절[4]
17	진동용 뇌 전기 자극장치[4](이식형에 한함)	42	특수재질 인공 어깨 관절[4]
18	이식형 통증완화 전기 자극장치[4]	43	특수재질 인공 손목 관절[4]
19	이식형 통증 제거용 전기 자극장치[4]	44	특수재질 인공 팔꿈치 관절[4]
20	이식형 전기 자극장치용 전극[4](15~19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전극)	45	특수재질 인공 발목 관절[4]
21	보조 심장장치[4]	46	인공 엉덩이 관절[3](관절 접촉면이 모두 금속재질인 경우에 한함)
22	횡격신경 전기 자극장치[4]	47	개인용 인공호흡기[3](상시착용에 한함)
23	중심순환계 인공 혈관[4]	48	저출력 심장 충격기[3]
24	비중심순환계 인공 혈관[3]	49	고출력 심장 충격기[3]
25	콜라겐 사용 인공 혈관[4]	50	호흡 감시기[2](상시착용에 한함)

* 인체에 1년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46개 품목 (1~46번)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4개 품목 (47~50번)

VI 연간 법정 의무교육 또는 자료제출 사항

연번	교육명칭, 제출자료명	법적근거	대 상	교육, 제출 기한	제출부서(팀)명	문의처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지원법	의료기관 종사자	매년 12월까지	보건의료과 (의무팀)	02-3425 -9228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 복지법	의료인	매년 12월까지	보건의료과 (의무팀)	02-3425 -9228
3			의료인 및 의료기사	매년 12월까지	보건의료과 (의무팀)	02-3425 -9228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 복지법	구급차운용기관의 응급구조사	매년 4월까지	보건의료과 (의무팀)	02-3425 -6797
5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매년 12월까지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02-3425 -6762
6	장애인학대,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 복지법	의료인 및 의료기사	매년 12월까지	보건의료과 (의무팀)	02-3425 -9228
7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매년 12월까지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02-3425 -6762
8	인권교육	정신건강 복지법	병원급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매년 12월까지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02-3425 -6762
9	자살예방교육	자살 예방법	병원급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매년 12월까지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02-3425 -6764
10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교육	인신매매 방지법	병원급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매년 12월까지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02-3425 -6762
11	집단시설종사자 결핵예방교육	결핵 예방법	의료기관 종사자	매년 10월까지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02-3425 -8554
12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교육	국가예방 접종지침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이수 권고)	*기본: 매 5년마다 *심화: 매 3년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02-3425 -6693
13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폐기물 관리법	의료기관 폐기물 담당자	최초 1년 이내 1회, 3년마다 재교육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 -5925
14	법정감염병 발생신고	감염병 예방법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환자 발생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2-3425 -8556
15	소독증명서	감염병 예방법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분기별 1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2-3425 -9339
16	의료기관 자율점검	의료법	의료기관의 장	매년 5월까지	보건의료과 (의무팀)	02-3425 -6792
17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의료법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매년 1월 중순까지	보건의료과 (의무팀)	02-3425 -6796
18	전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실적	아동 복지법	구급차운용기관의 응급구조사	매년 4월말까지	보건의료과 (의무팀)	02-3425 -6797
19	의료폐기물 자율점검	폐기물 관리법	의료기관 (종합병원 제외)	공문 발송 시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 -5925
20	비급여 진료항목, 금액, 진료내역 보고	의료법	의료기관의 장	*의원급: 5월 (연1회) *병원급 이상: 5월, 11월 (연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033-736 -2040

Ⅶ 부서 및 유관기관 안내

1)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운영에 따른 관련 부서

업무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의료기관 개설·변경 등	강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의무팀)	02-3425-6790 ▶ 메일 uimoo@gd.go.kr
약국 개설·변경 등	" (약무팀)	02-3425-922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건강검진 등 신고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	" (검진팀)	02-3425-6812
의료폐기물 관리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02-3425-5925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02-3425-6142.3

2) 유관기관

기관명	주소	대표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1644-2000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02-3460-311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137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20, 21층	1670-2545
대한의사협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	02-794-2474
강동구의사회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71 둔촌빌딩 405호	02-485-0765
강동구치과의사회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28길 53 306호	02-482-5807
강동구한의사회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49길 26 재정빌딩 B1호	02-473-4429
강동구약사회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70, 3층	02-472-0061
강동세무서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39	02-2224-0200
강동소방서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39	02-470-0119

- 의료기관 개설자를 위한 -

알기 쉬운 의료기관 개설·행정 길잡이

초판발행: 2026년 5월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주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45

전화: 02-3425-6790

강동구 보건소

